2027 중국 광저우 DSC 치과 전시회 (DSC 2027)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27년 03월 03일 ~ 03월 06일 (4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27 중국 광저우 DSC 치과 전시회 (DSC 2027)'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전 주요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참가기업은 사업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금융질서문란, 완전자본잠식,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동일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타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 전시회 개요

- ㅇ 전시회명 : 2027 중국 광저우 DSC 치과 전시회 (2027 DSC China)
- ㅇ 개최기간 : 2027. 03. 03(수) ~ 03. 06(토) (4일간)
- ㅇ 개최장소 : China Import and Export Fair Pazhou Complex
- ㅇ 전시품목 : 치과기자재 및 기계류, 관련 소모품 및 기구, 약품 등
- ㅇ 운영규모 : 32부스 288㎡
- ㅇ 주최사명 : Guangdong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Exhibition Co., Ltd.
- ㅇ 개최주기 : 매년
- ㅇ 홈페이지 : https://www.dentalsouthchina.com/

2. 모집 규모

- ㅇ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ㅇ 국고지원 규모 : 10부스 내외
- ㅇ 1개사 신청가능 부스 수: 기본 1개 부스 9㎡
  (최대 3부스까지 신청 가능하나, 국고지원은 1부스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부스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한국관 전체 운영규모는 32부스이며, 국고지원은 선정기업 기준 총 10부스 내외에서 지원 예정

ㅇ 한국관 위치 : D구역 2층 Hall 18.2, 빨간색 박스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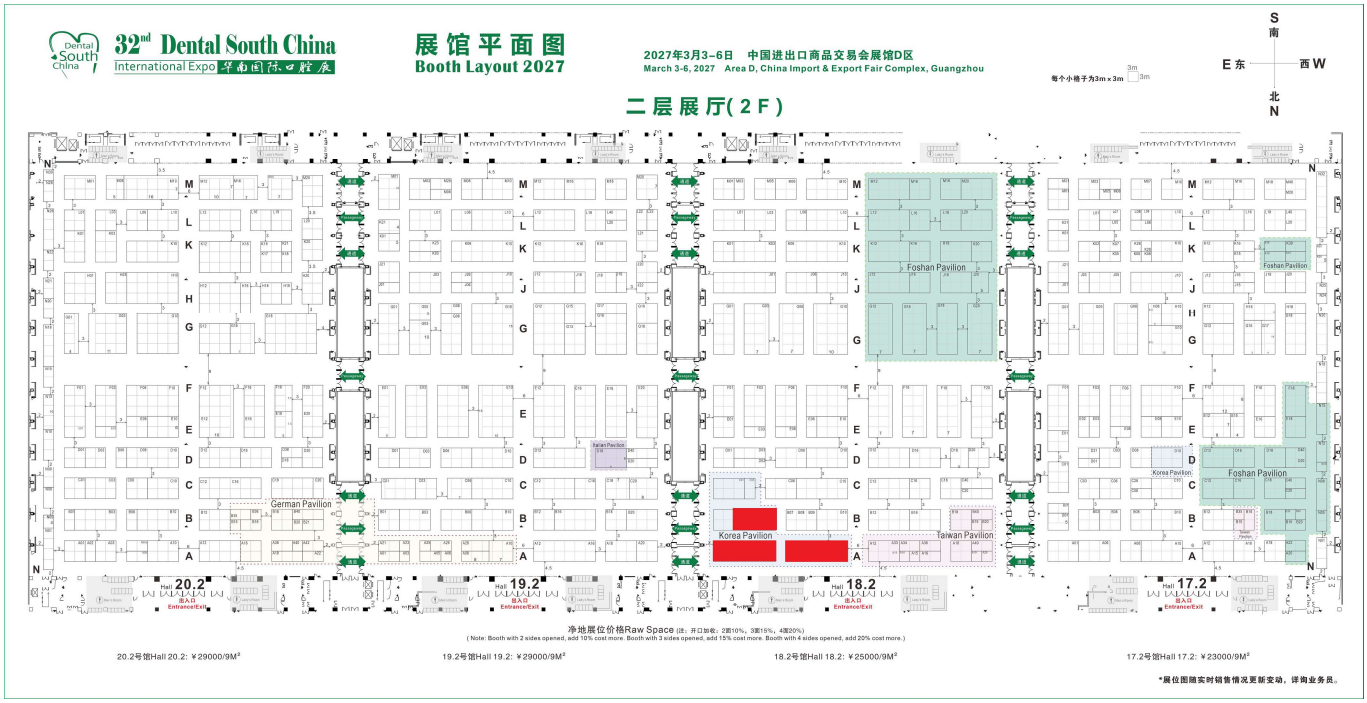

3. 지원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o 해당 품목 관련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기업은 제외됨

4. 지원내용

o 부스 임차료: 국고지원율 최소 50%

o 부스 장치비: 국고지원율 최소 50%

o 운송비: 전시물품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국고지원율 100%

o 통역비: 국고지원율 50%

(참가기업별 현장 상담용 통역 1인 기준,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산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참가 신청

o 신청기간 : 2026. 11.26(목) ~ 12.7(월) 18:00까지

o 신청방법 : 아래 3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신청 완료로 간주

①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온라인 신청
②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주관단체 이메일로 제출
③ 참가 계약금 납부

□ 신청방법 세부 안내

①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접속(https://www.smes.go.kr/sme-expo/)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2027 중국 광저우 DSC 치과 전시회 수출컨소시엄」 →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②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참가신청 시 **업로드한 모든 서류일체**를 하단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김명준 과장, kdiakmj@kodda.co.kr

③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신청 기간 내 참가 계약금 납부

* 참가 계약금을 신청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신청 접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총 참가비가 아닌 참가 계약금 400만원 선납부 必)

□ 참가비 납부

○ 기업부담금 : **500만원 이내(예정)**
※ 1부스, 9㎡ 기준 / 임차료·장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기업 납부금
※ 통역비, 추가 장치비, 운송 초과분, 통관비 등은 별도 발생 가능
○ 기업부담금 내역 : ① 임차료, ② 장치비
○ 해외 체제비 및 여행경비, 개별 장치 옵션, 통관 시 관세 등은 각 회사 부담

○ 납부방법 :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기간 내 참가 계약금 입금

- **참가 계약금 : 1부스 당 400만원 / 2026년 12월 7일까지**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법인계좌로 납부
- 잔　금 : 미정 / 참가업체 확정 후 통보

○ 입금처 : **기업은행 037-046640-04-456**, 예금주 :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 (유의사항)
- 총 참가비는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기업 납부 금액이며, 국고지원율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확정 잔금 및 납부기한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주최 측 비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참가 계약금 환불 불가
- 미선정 시 참가 계약금 환불 조치

□ 선정 및 통보

○ 참가기업 선정: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첨부 참조)

* 수출실적,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성장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가점사항 등을 종합 평가

○ 선정통보: 참가기업 모집 마감 후 선정평가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개별 통보

※ 모집 현황, 신청서류 보완, 평가 일정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 참여기업은 동일 사업 기간 내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참여기업은 추후 기업부담금 산정내역, 국고지원 내역, 향후 진행일정 등을 문서로 안내받을 예정임

6. 세부 지원 및 운영사항

□ 국고지원

①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ㅇ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의 50% 이내 국고지원 예정

ㅇ 장치 기본제공 범위는 추후 선정된 장치사 및 한국관 구성계획에 따라 안내 예정

- 예: 기본벽체, 바닥재, 회사명 사인보드,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② 운송비

ㅇ 전시물품에 한하여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100% 이내 국고지원

ㅇ 공식 운송사를 통한 운송 기준으로 지원 예정

ㅇ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운송비, 통관 시 관세 및 기타 부대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③ 통역비

ㅇ 참가기업별 현장 상담용 통역 1인 기준 지원

ㅇ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국고지원 50% 이내

ㅇ 단가 초과분 및 추가 통역원 채용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세부 지원 범위 및 인정 여부는「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및 중소기업중앙회 정산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주관단체 운영지원

ㅇ 한국관 부스 임차 및 주최 측 제출서류 등 전시 참가 관련 행정 지원

ㅇ 한국관 전시디자인설치사, 운송사 등 공식 협력사 선정 및 운영 지원

ㅇ 참가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ㅇ 전시기간 중 한국관 현장 운영 및 참가기업 상담 지원

ㅇ 사후 성과자료 취합 및 결과보고 관련 안내

※ 한국관 참가기업은 협회가 선정한 공식 장치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별 장치 옵션 및 추가 요청사항은 참가기업 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음

8. 참가기업 자체 부담 경비

①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 및 체재비
② 국고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운송비 및 통관 관련 비용
③ 기본 장치 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장치비 및 개별 옵션 비용
④ 통역비 국고지원 한도 초과분 및 추가 통역원 채용 비용
⑤ 비자 발급비, 현지 이동비, 보험료 등 기타 개인·기업별 발생 비용
⑥ 기타 국고지원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9. 모집 완료 후 향후 일정

① 참가기업 모집 마감 후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진행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별지 제12호 참여기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선정결과는 평가 및 내부 검토 완료 후 개별 통보 예정
② 미선정 기업 참가 계약금 환불
  - 미선정 기업의 경우 참가 계약금 환불 조치
③ 선정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 한국관 참가 일정, 부스 배정, 장치·운송·통역 등 주요 추진사항 안내 예정
④ 잔금 납부
  - 신청 시 납부한 참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참가기업 확정 후 별도 안내
  - 참가비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통보 이후 참가기업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참가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음

10. 문의처

① 전시회 관련 문의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김명준 과장: 02-754-1933, kdiakmj@kodda.co.kr
이서열 사원: 070-4618-7438, kdia7545921@kodda.co.kr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가신청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확인서

구분	순서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필수 제출	1	수출컨소시엄 참가신청서	V	【별지 제9호】
	2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가 동의서 1부	V	【별지 제10호】
	3	기업정보활용 동의서 1부	V	【별지 제11호】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V	
	5	중소기업확인서	V	한국평가데이터
	6	회사 및 제품소개서(국/영문)	V	
	7	통장사본	V	
	8	국세 ACL 지방세 완납 증명서	V	
	9	수출실적증명원(2025)		첨부3 참조
		수출실적증명원(2024)		
해당시 제출	10	특허증, 실용신안증, 디자인등록증		
	11	ISO13485, MDR(MDD), FDA 등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서		
	12	GD(Good Design) 마크 인증서		
	13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14	기업부설연구소 확인서		
	15	R&D 매출 성과 우수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	해당 전시회 개최국가에 대해 최근 2개년 수출(샘플 포함) 수출신고필증		
	17	해당 전시회 개최국가의 기업에 대한 MOU 체결양해각서 사본		
	18	영문카탈로그, 영문홈페이지, 영문동영상		
	19	국가별 현황이 기재된 수출실적증명원(2025) 국가별 현황이 기재된 수출실적증명원(2024)		각각 1부
	가점1	이노비즈(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메인비즈(Main-Biz)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벤처기업		벤처기업협회
	가점2	여성기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종합센터
	가점3	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CES주관단체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창업진흥원
		초격차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소부장 스타트업 100		창업진흥원
		소부장 강소기업		기술보증기금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가점4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혁신선도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지역스타기업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인증서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원
	가점5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상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기업명:　　대표이사　　(인)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귀중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 기준(표준안)

항목 및 배점		세부항목	해당 기준	점수
수출 역량 및 잠재력 (30) * 간접 수출 및 서비스 수출 포함	**수출액 (15)**	ㅇ 직전년도 수출실적 - 직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0 ~ 500만불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 ~ 100만불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6점)	*수출액 작성*	
	수출 증가율 (15)	ㅇ 직전년도 수출증가율 - 직전년도 수출액 50% 이상(15점) - 직전년도 수출액 20~50% 미만(12점) - 직전년도 수출액 0~20% 미만(9점) - 직전년도 수출액 0% 미만(6점)	*수출증가율 작성*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10)		ㅇ 당해연도, 동일 주관단체 컨소시엄 참여 횟수 * 1회 이하(10점), 2회 이하(8점), 3회 이상(5점)	*참여횟수 작성*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25)		ㅇ 해외인증. 정부인증 등 제품 및 기술 보유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CE, UL, CCC 등) -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 NT, KT, EM, 싱글PPM, GQ 등 우수기술 인증 -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 보유 기업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 * 5개 이상(25점), 3개 이상(20점), 1개 이상(10점), 해당없음(0점))	*해당 개수 작성*	
수출성장성 (15)		ㅇ 파견 국가에 대한 시장조사 등 준비 및 성과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수출(샘플 포함)실적 보유 기업 - 모집시점 기준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MOU 체결 실적 보유기업 - 마케팅툴(외국어 카달로그·,홈페이지,·영상등)보유 기업 - 해당 전시회(상담회) 파견국에 대해 최근2개년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적 보유기업 - 원가 절감방안 및 품질관리 활동 등 제품·가격 경쟁력 보유기업 * 4개 이상(15점), 3개 이상(10점), 1개 이상(5점), 해당없음(0점)	*해당 개수 작성*	
수출국 다변화 노력 (20)		ㅇ 신시장 개척 노력 사항 (예시) - 온·오프라인 활동(홈페이지 구축, SNS활동, 현지몰 입점 등)을 통한 현지 프로모션 실시 이력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 보유 여부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수준	*평가 점수 작성*	

	- 현지 바이어와 컨택 진행 내용 - 해외전시회(상담회) 참여 현황 등 * 우수(10점), 양호(5점), 보통(3점), 미흡(0점) ※ 신시장 : 모집연도 기준 직전연도 수출국 중 그 이전연도 수출국 외 신규수출국을 의미 예) '25년 모집 시 '23년 대비 '24년 신규수출국 수		
	ㅇ 신규수출국 수 * 0개국(0점), 1개국(1점), 2개국(2점), 3개국(3점), 4개국(4점), 5개국 이상(5점)	*해당 국가수 작성*	
	ㅇ 신규수출국 수출실적 - 0$ (0점) - 0$ 초과 50,000$ 이하(1점) - 50,000$ 초과 100,000$ 이하(2점) - 100,000$ 초과 500,000$ 이하(3점) - 500,000$ 초과 1,000,000$ 이하(4점) - 1,000,000$ 초과(5점)	*수출액 작성*	
가점 ※ 가점은 기업당 최대 5점까지 인정	ㅇ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점	
	ㅇ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1점	
	ㅇ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ㅇ 우수 중소기업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각 1점 (최대 2점)	
	ㅇ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또는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기업	1점	
합계			**점**

※ 동점자 발생 시 수출액, 수출증가율 순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참고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방법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1	인증·시험기관 견적서	○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시험 견적서 - 인증·심사·시험 견적서(미승인컨설팅제외)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2	수출계약서	○ 참여기업 제품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등)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3	수출실적	○ 수출실적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전전년도,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서비스 수출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함 - (직접)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간접) KTNET에서 발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4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s.go.kr/sme-expo)→마이페이지→참가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97
5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 →기업마당→인증기업정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6	Main-Biz기업	○ 메인비즈 (smes.go.kr/mainbiz/main.do)에서 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1666-5001
7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벤처확인시스템 에서 확인 (www.smes.go.kr/venturein)	(사)벤처기업협회	1566-6487
8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장애인기업 확인조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588-6072
9	여성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 (www.smpp.go.kr) →SMPP소개 → 공공기관 주요서비스→여성기업 확인조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2038-8953
10	R&D매출성과우수기업	○ R&D 매출성과 우수기업(ROI 5이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당기업 제출 시
11	수출성장성	①파견국 최근 2개년 수출 및 샘플계약실적, ②파견국 MOU체결 실적, ③파견국 최근 2개년 현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실적, ④외국어 홍보물(홈페이지, 카다로그, 영상 등), ⑤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전략(내부 보고자료, 보고서, 회의록)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1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 납품대금 연동 참여기업 확인서 -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조정한 실적 확인 후 발급 가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연번	구비서류명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3	신규수출국	○ 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을 통해 직전년도 최근 2년간 수출국 확인 * 무역협회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 발생	무역협회	해당기업 제출 시
14	글로벌강소기업1000+ 프로젝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한 지정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해당기업 제출 시
15	CES 혁신상 수상기업 등	○ CES(최고)혁신상 수상기업	CES전시회 주관기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16	유니콘기업	○ 예비·아기 유니콘기업	창업진흥원	02-2039-1320
17	초격차 스타트업	○ 초격차 스타트업(딥테크 포함) 선정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681
18	소부장 스타트업	○ 소부장 스타트업 선정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690
19	소부장 강소기업	○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0	그린뉴딜기업	○ 그린뉴딜100 지정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529
21	상생모델 지정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34
2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035
23	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63
24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24
25	수출 유공 포상기업	○ 수출 유공 포상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4-751-9713
26	서비스 실적 보유기업	○ 서비스수출실적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주관단체	해당기업 제출 시
27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인증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13~5

※ 참가신청 제출서류 발급/확인 기관은 변동 될 수 있음 주관단체로 확인 요망